2022. 10

입 법 정 보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Ⅰ.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1.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정)·····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4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

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7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8

7. 방송법 시행령 (개정)·····9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0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1

1.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12

2.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13

3.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14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5

Ⅰ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2. 9. 20. 시행 `22. 10. 1.]

소관부서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042-481-1248

제정이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공포,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적용방식,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급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8조 및 별표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적용방식(제10조, 제11조, 제21조 및 제22조)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의 세 가지 기준면적 구간을,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하,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초과의 세 가지 기준면적 구간을 각각 설정함.

2)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 모두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임업인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정함.

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29조)

1) 산림청장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으로 구성되는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2)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 기준(제30조 및 별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5 9. 시행 `22. 10 1.]

소관부서 :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1

개정이유

국가가 약제비용을 지급하는 대상을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까지 확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약제비용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며,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눈·손가락·발가락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또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진료 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약제비용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지급 금액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로 제한함.

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102조제1항 및 제4항)

1)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및

제공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및 학습보조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수임(受任) 기관을 변경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 권한을 교육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도 위임함.

다. 상이등급의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 제7호 및 제8호)

1) 눈에 관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 중 한쪽 눈의 시력에 관한 기준을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완화함.

2) 손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6급의 기준 중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를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로 완화함.

3)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 ‘양쪽 발가락 중 4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를 신설하는 등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완화함.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10. 4. 시행 `22. 10. 4.]

소관부서 :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5. 9. 시행 `22. 10. 1.]

소관부서 :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약제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약제비용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약제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 10. 18. 시행 `22. 10. 18.]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 044-204-78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뉴딜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무를 명시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지원, 작업장 디지털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22. 10. 25. 시행 `22. 10. 25.]

소관부서 :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립의 각급 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설이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해서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각급 학교와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설립주체에게 적용되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상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이 이 규정보다 해당 학교법인 등에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10. 25. 시행 `22. 10. 25.]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던 특정기관의 자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등을 소유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 구독률을 종전에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 가구 수와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총 가구 수와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 4. 26. 시행 `22. 10. 27.]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044-205-39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정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인력·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9. 30.]

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제영화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영화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국제영화제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국제영화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7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2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10. 17.]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결일 `22. 9. 19.]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함 (안 제3조).

나. 사업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 선정: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의견22-0263] 충청남도 아산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 · 단체 등이 문화 ·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 · 단체 등이 문화 ·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4제2항에서는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 금주구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주구역에 대해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에 대한 예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 할 것인바,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

하려는 음주폐해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과 문화 · 체육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특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 · 단체 등이 문화 ·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 단체 등이 문화 ·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의견22-0267]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요금을 징수하는 사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 관리하는 급수시설로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일의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55조제3항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55조에서는 시장 ·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제5항) 등 시장 ·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이 주로 수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등 관련]

[의견22-0252] 인천광역시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는 시·도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시의회의 사무'로서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시의원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시의회의 사무'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로 보아 사무처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가 '시의회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공약목록집 배포', '연차별 공약이행 로드맵 구축', '의원별 공약의 예산반영 여부 파악' 등의 선거공약 관리 사무는 의원이 후보자 개인의 자격으로 자치구역 주민에게 행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무처가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의회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가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당선 이후 의원의

입법활동으로 구체화되므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의 입안이나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무처가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겠지만,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자체를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보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무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등의 사무는 ‘시의회의 사무’나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보기 어려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